

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함.

2. 주요 내용

가. 「수도법」에 따라 위원회명과 위원회 기능 개정

-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⇒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
- 위원회의 기능
 -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 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
 -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나. 근거법조항 변경

- 수도법 제19조의 2규정 ⇒ 「수도법」 제30조

다. 위원 수 확대

- 9인이내 ⇒ 15명 이내

라. 간사

- 시장이 임명 ⇒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계법령

- 수도법 제30조,
-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

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”을 “「수도법」 제30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중 “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를 “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수질관리기술의”를 “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제3조제1항 중 “9인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장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 례</u>	<u>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수도법 제19 조의 2</u> 규정에 따라 양질의 수돗 물 공급을 위하여 <u>구미시수돗물수 질평가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위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수도법</u> 」 <u>제30조</u> ----- ----- <u>구미시수돗물평가위 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. 1. (생 략)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<u>수질관리기 술의</u> 자문 3. <u>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감시</u> 4. (생 략)	제2조(기능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</u> ---- 3. <u>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 사 지점의 선정</u>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9인이 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② (생 략) ③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	제3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15</u> <u>명 이내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

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시장은 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
하였을 때에는 임기중 에도 위원
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8조(간사) ① (생 략)

②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
임명한다.

제9조(수당등) ①위원회의 회의참
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
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
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구미시
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 에서
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-----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
으로 한다.

제9조(수당등) ①-----

----- 「구미시

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-----

-----.

관 계 법 령

□ 수도법

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수도법 시행령

제49조의2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"수돗물평가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